

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기정조례안

의안 번호	76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3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이수송의원외 11인

1. 제안 이유

- 부산직할시 남구 직제 규칙 개정(93. 7. 19 남구규칙 제289호)으로 건설행정과가 신설되고 토지관리과가 폐지되었으며 지적과가 총무국 소관에서 도시국 소관 부서로 기관되는 등 정부시책과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 기관의 직제가 수시로 변경되는 현실에 있으며,
-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는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·과를 명시하고 있음.
- 따라서 남구 직제 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국·실 단위로 조정함으로써 빈번하게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제2항 제1호중 총무국 소관 과명칭(총무, 재무, 세무1·2, 지적, 시민, 민방) 삭제
- 제3조 제2항 제2호중 사회산업국 소관 과명칭(사회, 가정복지, 환경보호, 청소, 위생, 지역경제) 삭제
- 제3조 제3항 제3호중 도시국 소관 과명칭(도시정비, 지역교통, 토지관리, 건축, 건설) 삭제

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기정조례안

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제2항 제1호중 (총부, 재부, 세무 1·2, 시민, 민방) 제2호중 (사회, 가정복지, 환경보호, 청소, 위생, 지역경제) 제3호중 (도시 정비), 지역교통, 토지관리, 건축, 건설)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문 대비 표

현 행	기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총무위원회</p> <p>가.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, 총무국에 속하는 사항 (총무, 재무, 세무1·2, 시민, 민방)</p> <p>2. 사회산업위원회</p> <p>가.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(사회, 가정복지, 환경보호, 청소, 위생, 지역경제)</p> <p>나. 남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도시위원회</p> <p>가.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(도시정비, 지역교통, 토지관리, 건축, 건설)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/p> <p>가. ----- ----- (삭 제)</p> <p>2. ----- 가. ----- (삭 제)</p> <p>나. -----</p> <p>3. ----- 가. ----- (삭 제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